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7 선고 2020가단2090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이나라

변 론 종 결 2022. 2. 23.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5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14.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와 2019. 3. 15. 접수 제13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2014. 5. 9., 2018. 9. 3., 2018. 9. 13. 총 3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C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대출금을 미변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2020. 3. 11. 기준 합계 215,579,152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C은 2019. 3. 14.경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대출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2,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1990. 6. 22.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2019. 3. 12. 협의이혼한 사실, ② C은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2019. 3. 14.경 시가는 230,800,000원 상당인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G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03,500,000원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피고는 C과 28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자녀 둘을 양육하였고, C과 피고의 재산증식에 기여하였던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을 하면서 C이 부담하는 대출금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자녀들은 당시 성인이었으나 생활비용 내지 취업준비 비용을 피고가 지원하기로 함), ⑦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429.20㎡
2층 470.00㎡
3층 470.00㎡
4층 470.00㎡
5층 470.00㎡
지층 433.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375㎡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261.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29.2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36.10분의 118.228

2.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429.20㎡
2층 470.00㎡
3층 470.00㎡
4층 470.00㎡
5층 470.00㎡
지층 433.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375㎡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261.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70.0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36.10분의 129.468

3.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429.20㎡

2층 470.00㎡

3층 470.00㎡

4층 470.00㎡

5층 470.00㎡

지층 433.6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375㎡
 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261.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470.00㎡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636.10분의 129.468 끝.

